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와이플러스건설(주)(하미영)

나. 전화번호 : ① 031-351-8754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합지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하부를 도막재로 밀폐시켜 샌드위치형 다층수밀화 구조를 형성한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이하, 플러스 시트재)와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이하, 플러스 도막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플러스 시트재는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하여 고유의 유연성과 탄성력을 부여하고,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한 자착형 타입의 방수재로 접합부 날개형 보강재를 통해 이질감 없는 보강이 가능하며, 접합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플러스 시트재는 숯이 첨가된 플러스 도막재 사이에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 형태로 적용되어 다층의 방수구조를 형성하면서 수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비노출방수층과 노출방수층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방수층의 수밀안전성을 강화한 방수기술로 건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수명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방수층의 다층수밀화를 구현한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전용 방수시트 포설장비로 포설 하며, 시트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성분의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으로써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로 방수층의 다층수밀화를 구현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세대 수 이상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감사의 결과 등 주요관리정보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 신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개기간 및 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10.24. 및 2020.4.2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부여(안 제13조제1항 개정)

-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여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경우 1년에 2회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입주자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3)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 동별 대표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관리비 등 및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 등 공동주택의 주요정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

- 1)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로 표현을 변경하고,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0조제3항)
- 2) 관리비 등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시한, 공개 항목 규정 신설(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 1) 관리비 등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하여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개내역,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